



제428회 국회(임시회)  
제2차 국토교통위원회

#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《도심융합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》

■ 장철민의원 ·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 
(의안번호 제2211200호)

2025. 8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박재유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 . 장철민의원·서범수의원 대표발의(제2211200호) .....     | 1 |
| 1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3. 검토의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|
| 가. 국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(안 제34조의2 신설) .. | 2 |

## I. 장철민의원·서범수의원 대표발의(제2211200호)

### 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장철민의원·서범수의원 등 12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7. 1.

다. 회 부 일 : 2025. 7. 2.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·주거·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·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.

그런데 특구 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데,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 신설).

### 3. 검토의견

#### 가. 국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(안 제34조의2 신설)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4조의2(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) ① 국가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.<br>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| ※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※ 적용례 : 이 법 시행 전 지정된 도심융합특구에도 적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안 제34조의2는 국가가 도심융합특구<sup>1)</sup>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<sup>2)</sup>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·주거·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

1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**도심융합특구**”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·주거·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 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

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“**기반시설**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도로·철도·항만·공항·주차장 등 교통시설

나. 광장·공원·녹지 등 공간시설

다. 유통업무설비, 수도·전기·가스공급설비, 방송·통신시설, 공동구 등 유통·공급시설

라. 학교·공공청사·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·문화체육시설

마. 하천·유수지(遊水池)·방화설비 등 방재시설

바.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

사. 하수도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

는 혁신공간으로서, '24.11월에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, 울산 등 총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<sup>3)</sup> 고시하였음.

현행법 제34조제1항<sup>4)</sup>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, 같은 조 제2항<sup>5)</sup>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반시설 중 도로, 상·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, 전기·가스·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해당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가, 통신시설의 경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함.

이에 기반시설 중 도로, 상·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, 에너지 공급시설은 주로 해당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방공사가, 그 외의 기반시설

3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제9조(도심융합특구의 지정·변경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.

1.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시권 거점도시일 것
2.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
3. 대학·연구소·기업·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
4.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

제4조(적용범위) 이 법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하 “수도권”이라 한다)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4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제34조(비용의 부담 등) ①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.

5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제34조(비용의 부담 등) ②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.

1. 도로 및 상수도·하수도 시설의 설치: 지방자치단체
2. 전기시설,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: 해당 지역에 전기,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자
3. 통신시설의 설치: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은 사업시행자<sup>6)7)</sup>가 설치해야 함에 따라 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며,

현행법 제34조제3항<sup>8)</sup>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현행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개정안과 같이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,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 거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는 지가가 높은 지방 도심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시행자 확보가

---

6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제14조(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를 지정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(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법인

7) 울산·부산의 경우 지방공기업(도시공사)를 사업시행자로 지정·고시하였으며, 대전·대구·광주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 중인 상황임

8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제34조(비용의 부담 등)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어려운 상황으로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시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,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비율은 유사 입법례<sup>9)</sup>를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참고로, 법무부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원비율의 경우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,

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,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추진에 따른 높은 보상비 등 열악한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574

9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
제29조(기반시설 지원)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·도로·용수시설·철도·통신·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.

1.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

2.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

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,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## 참고 1

## 도심융합특구 사업 개요

### □ 개념

-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산업·주거·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하여 기업투자·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



- (기존사업과 차별성) 성장기반을 갖춘 주요도시 도심을 대상, 공간 조성(H/W)과 기업지원(S/W)을 융합, 규제완화·인센티브 등 특례 제공

### □ 주요 내용 [국토부 플랫폼 조성 + 범부처 기업·청년 지원 프로그램]

- (공간개발) 기업 지원공간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문화·주거·상업 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(입지규제를 완화하여 고밀·복합개발)
- (기업·청년지원) 각 부처의 기업·대학·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제공\*하고, 타 특구 중복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
- \* (중기부) 중소벤처기업 지원 (산업부) 특화산업 육성지원 (과기부) R&D 중심 지원
- (지원체계) 범부처 협업을 통해 특구를 지원하고, 지역 내 전담기관도 설립하여 지속적·체계적 운영(특구진흥재단, 기업종합지원센터)

### □ 추진 현황

- (특별법 제정) 도심융합특구법 제정('23.10.24공포), '24.4.25 시행
- (선도사업)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('24.11),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준비 중
- \* ▲ 부산 : 사업시행자 지정('24.11) 후, 실시계획 수립 중, ▲ 울산 : 사업시행자 지정('25.6) 후, 실시계획 수립 준비 중, ▲ 대전·광주·대구 :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 중